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34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348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714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9. 20.

판결 선고 2017. 10.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714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6. 6. 10.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34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호실에 관한 2015. 10. 5.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5. 접수 제234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3면 제1행 이후

(설령 피보전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설정한 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장지용

판사강건

별지